

의안번호	2212194
의 퇴 인	추경호의원
회 답 일	2025.10.16.
추계번호	25E437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조정,
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,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
- 재정수입 감소는 2026년 940억원, 2029년 5조 2,292억원 등 2026~2029년 4년간 총 14조 8,893억원(연평균 3조 7,223억원)으로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연장 등 (안 제126조의2제1항,제2항)	-940	-46,320	-49,165	-52,204	-148,629	-37,157
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(안 제126조의3제2항)	-	-88	-88	-88	-264	-88
합계	-940	-46,408	-49,253	-52,292	-148,893	-37,223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26조의2제1항, 제2항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○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- (현행)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*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: 40% - (개정안)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*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: 50%
2	안 제126조의3제2항 (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)	○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* 일몰연장 *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따라 소득세 세액공제 - 적용기한 : 2025년 12월 31일 → 2028년 12월 31일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26조의2제1항, 제2항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○	
2	안 제126조의3제2항 (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2026년 1월 1일 시행하며, 법 시행 이후 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전제
 -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
 -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,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2026년부터 세수효과 발생(징수 기준)
 - 현행 일몰기한은 2025년까지이므로,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~2029년 동안 발생하며,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
-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연장 등

(1) 감면 실적

□ (감면실적) 2025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4조 3,859억원임¹⁾

- 2021년과 2023년 조세지출액은 전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조세지출 실적치로, 각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지원 대책,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함에 따라 해당연도 조세지출 실적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

[표 2]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액

(단위: 억원, %)

	2019 실적	2020 실적	2021 실적	2022 실적	2023 실적	2024 실적	2025 잠정
조세지출액	22,553 (6.5)	24,698 (9.5)	31,882 (29.1)	31,675 (-0.6)	39,458 (24.6)	40,884 (3.6)	43,859 (7.3)

주: ()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

자료: 기획재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

(2) 추계 방법

□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실적치 및 총급여규모별·공제항목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

- (일몰 연장) 2024년(2023년 귀속) 조세지출 실적치를 바탕으로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

- 1) [표 2] 기준 ① 2019년(2018년 귀속)부터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30%에서 40%로 인상되었으며,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·공연비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신설됨
- ② 2021년(2020년 귀속)에는 2020년 3월과 4~7월기간 동안 사용액에 대하여 각각 30~80%, 80%의 공제율을 적용(기존 15~40%)하고, 총급여규모별 공제한도를 30만원 확대함
- ③ 2022년(2021년 귀속)에는 공제항목별 공제율이 정상화(15~40%)되고,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% 공제율 추가 적용
- ④ 2023년(2022년 귀속)에는 소비활성화를 위해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이 전년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, 5%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각각 20% 추가공제 적용
- ⑤ 2024년(2023년 귀속)에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('23년 하반기 사용분부터 적용) 추가, 공제한도 통합 등 조정, 2023년(4~12월)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50%, 2023년(1~12월)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80%로 한시 상향조정
- ⑥ 2025년(2024년 귀속)에는 전년대비 5%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% 추가 공제(100만원 한도) 적용

- 조세지출예산서의 2024년(2023년 귀속) 실적치에서 일시적 제도변화(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조정) 효과를 제거한 2023년 귀속 기준 조세지출액 추정
- (공제율 상향조정) 2023년 귀속 총급여규모별 1인당 전통시장 사용분에 공제율 인상분(10%p) 및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
 -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는 개인별 총급여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상세자료(공제항목별 사용금액) 등이 있어야 추계가 가능하지만, 자료의 한계로 근로소득자의 총급여규모별 신용카드 사용액 집계자료(국세청 제출 자료)를 이용
 - 신용카드 공제항목의 공제율 변경에 따른 공제금액의 변화는 개인별 기본공제 한도, 기본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액, 공제한도 초과분 중 추가공제 가능 금액(한도 초과분과 대중교통·전통시장 및 도서·공연비 등 공제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)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, 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1인당 전통시장 사용금액²⁾에 공제율 상향분(10%p)을 적용한 금액을 모두 공제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3년 기준 세수효과 추계
- 일몰연장 및 공제율 상향조정에 대한 기준연도 기준 세수효과 추계 후, 향후 세수효과는 기준연도 세수효과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증가율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하고, 두 세수효과 추계치를 합산하여 총 세수효과 산출
 - 향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인원은 2018~2023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(4.2%)로 증가하고,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

[표 3] 기준연도 이후 세수효과 증가율

(단위: %)

구분	2024	2025	2026	2027	2028
소비자물가상승률 (A)	2.3	2.0	1.9	2.0	2.0
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인원 증가율 (B)	4.2	4.2	4.2	4.2	4.2
합계 (A+B)	6.5	6.1	6.2	6.2	6.2

주: 1.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('25.9.)의 전망치 사용

2.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인원 증가율은 2024년부터 2018~2023년의 연평균 증가율(4.2%) 사용

2) 총급여 규모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인원으로 나눈 값

(3) 추계 결과

-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,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6~2029년 동안 총 14조 8,62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50%로 상향할 경우, 소득세수는 2023년(귀속연도) 기준 8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([표 4] 참조), 이후 기간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인원 증가율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적용 시 2026~2029년 4년간 4,1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 -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7~2029년 3년간 14조 4,51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4]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(2023년 기준)

(단위: 명, 백만원)

총급여액 규모	국세통계연보		1인당 전통시장 사용금액 ³⁾	1인당 추가공제액	현행 1인당 과세표준 ⁴⁾	한계세율 (%)	세수효과 (억원)
	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인원 ¹⁾	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인원 ²⁾					
	A	B	C	$D=C \times 10\%p$	E	F	$G=-(D \times F) \times B$
합계	10,944,338	9,679,257	0.47	—	—	—	-831.2
1천만 이하	538	—	—	—	—	—	—
1.5천만 이하	7,695	2,876	0.08	0.01	5.2	6%	0.0
2천만 이하	167,603	146,369	0.17	0.02	7.2	6%	-1.5
3천만 이하	1,586,257	1,445,541	0.30	0.03	11.7	6%	-26.2
4천만 이하	1,853,186	1,676,391	0.35	0.04	17.4	15%	-88.5
4.5천만 이하	876,089	795,273	0.39	0.04	22.0	15%	-46.0
5천만 이하	806,276	735,067	0.42	0.04	25.3	15%	-46.7
6천만 이하	1,372,820	1,250,479	0.48	0.05	30.5	15%	-90.6
8천만 이하	1,846,779	1,666,854	0.58	0.06	41.3	15%	-143.8
1억 이하	1,098,129	958,636	0.65	0.07	58.1	24%	-150.0
2억 이하	1,169,402	929,578	0.68	0.07	95.7	35%	-221.1
3억 이하	103,640	56,484	0.61	0.06	197.5	38%	-13.2
5억 이하	39,284	13,080	0.58	0.06	326.6	40%	-3.0
10억 이하	13,108	2,300	0.61	0.06	604.5	42%	-0.6
10억 초과	3,532	329	0.65	0.07	1,873.8	45%	-0.1

주: 1)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총급여 규모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인원

2)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총급여 규모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인원

3) 총급여 규모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인원으로 나눈 값

4)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총급여 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 및 2024년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5]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9년

(단위: 억원)

세수효과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	-940	-997	-1,058	-1,124	-4,119	-1,030
일몰 연장	-	-45,323	-48,107	-51,080	-144,510	-48,170
합계	-940	-46,320	-49,165	-52,204	-148,629	-37,157

나.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

(1) 감면 실적

□ (감면실적) 2025년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*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88억원임

*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(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)을 발급한 경우, 해당 과세기간별 발급건수에 대해 20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

○ 2025년 조세지출액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분이 반영된 잠정치임

[표 6]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조세지출액

(단위: 억원, %)

연도	2019 실적	2020 실적	2021 실적	2022 실적	2023 실적	2024 실적	2025 잠정
조세지출액	47	54 (14.9)	104 (92.6)	58 (-44.2)	46 (-20.7)	17 (-63.0)	88 (417.6)

주: ()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

자료: 기획재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

(2) 추계 방법

□ 2025년 조세지출 규모가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○ 2025년 조세지출액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분이 반영된 잠정치이므로 추계에 활용

(3) 추계 결과

-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~2029년 동안 총26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7]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
(단위: 억원)

연도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 일몰연장	-88	-88	-88	-264	-88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